

농림축산식품부

주 의 요 구

제 목 도시농업활성화(○○○○조성)사업 하자검사 업무 소홀

기 관 명 부산광역시

관 계 기 관 본청

내 용

부산광역시에서는 2014년도에 청사미관 개선, 쾌적한 근무환경 조성, 열섬 방지와 에너지 절감을 위해 부산○○○○청 4층 옥상을 사업대상지로 선정하여 텃밭, 야외학습장, 정원, 방수작업 등 494m² 규모에 총 공사비 93백만원을 지원하여 ○○○○ 조성 국비시범사업을 추진하였다.

「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6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8조의 규정에 따르면 공사의 도급계약에 대한 담보책임 존속기간을 시설물별로 정하고 있어 ○○○○ 조성 국비시범사업은 계약업체인 허브동산과 하자담보 존속기간을 2년으로 계약 체결하였다.

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담보책임 존속기간 중에 있는 공사에 대하여 같은 시행령 제70조와 같은 시행규칙 제69조에 따르면, 담보책임의 존속기간 중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하자를 검사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그 사무를 위임하여 검사하도록 하고 있으며,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이 만료되

는 경우에는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바¹¹⁵⁾에 따라 지체없이 따로 검사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다.

또한 「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」 제20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의2의 규정에 따르면 하자사항 발생에 대하여 하자보수 이행을 지시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.

따라서 부산광역시(○○○○○과)에서는 2014. 12. 1.부터 2015. 1. 15.까지 ○○○○ 조성 국비시범사업을 완료하였으며, 하자보증기간을 2년(2015. 1. 23. ~ 2017. 1. 22.)간 시공사인 ○○○○(대표 ○○○)과 체결하였기 때문에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하자검사를 실시하여 시설물의 안전성을 높이는 동시에 사후보수를 위한 재정 부담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그런데도 부산광역시에서는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한 ○○○○ 조성 국비시범사업을 완료하였으나 하자검사를 2015년 하반기만 1회 실시하였으며, 2016년과 2017년 상반기에는 하자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옥상텃밭 조성 국비시범사업 시설공사에 대한 하자검사 업무를 소홀히 하였다.

조치할 사항 부산광역시장은

[주의] 「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70조에 따라 공사 추진시 계약 조건을 성실히 준수하여 각종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 하시기 바랍니다.

115) 행정자치부 예규 제3호(2014. 12. 9) :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0절 계약담당자는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되기 14일 전부터 만료일까지의 기간 중에 따로 최종검사를 해야 하며, 최종검사를 완료한 때에는 즉시 하자보수완료 확인서를 계약상대자에게 발급해야 한다. 이 경우 최종검사에서 발견되는 하자사항은 이 확인서가 발급되기 전까지 계약상대자가 자신의 부담으로 보수해야 한다.